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4
----------	-------

발의연월일 : 2018. 4. 5.

발의자 : 신보라 · 홍문표 · 박덕흠

이종배 · 이종명 · 추경호

함진규 · 김석기 · 정갑윤

이은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국세징수법」 제86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접 마련함(안 제24조의4제1항 신설).

나. 행정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과태료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생 략) <u>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u> <u><신 설></u></p>	<p>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